

“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!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”



## 보 도 자 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- ▶ 보도 일시: 2012.3.21.(수) 조간,  
<인터넷 3.20 (화) 12:00 이후>
- ▶ 총 5 쪽 (붙임자료 포함)

◆ 고령사회인력정책팀 팀 장 최상운  
사무관 이지은  
☎ 02-2110-7312, 010-4706-3885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### 중소기업 현장체험도 하고 일자리도 찾고 **베이비부머 인생 2막, 50+ 새일터 사업으로 도전하세요**

- ☐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를 통해 새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「50+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」이 21일(수)부터 시행된다.
- ☐ 올해 처음 시작하는 「50+ 새일터 적응지원사업」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가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수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.
  - 이를 통해 구직자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현장체험을 한 뒤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고
  - 중소기업으로서는 베이비부머 퇴직자 등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.
- ☐ 참여 대상은 ▲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 ▲고용센터, 고령자 인재은행 등의 취업지원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이고

○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은 500인 이하 제조업이나 300인 이하 건설업 등과 같은 **우선지원 대상기업**이다

□ **참여 인원은 2천명**이며, 참여자에게는 1~3개월 동안 **최대 월 40만원의 수당**이 지급된다.

\* 일 8시간,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당 제조업은 5,000원, 비제조업은 4,600원의 참여수당 지급

□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와 기업은 다음달 **20일까지 중소기업 중앙회**로 연락 하거나 홈페이지([www.kbiz.or.kr](http://www.kbiz.or.kr))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□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“50+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은 일을 찾는 50대 이상 구직자와 숙련 인재를 찾는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” 이라고 하면서

○ “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 구직자들에게 인생 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” 고 밝혔다.

< 별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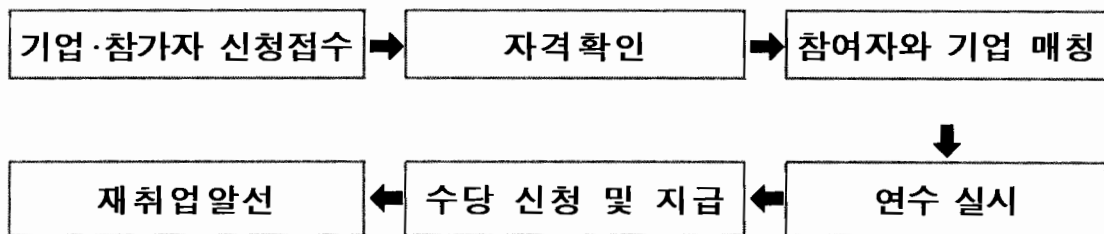
「50+ 새일터 적응지원사업」 개요 1부

## 「50+ 새일터 적응지원사업」 개요

### □ 사업 목적

-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현장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중소기업에게는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

### □ 지원 절차



### □ 지원 대상 및 요건

- 참여자는 50세 이상 구직자 중에서
  - 취업지원 프로그램\*등 참여종료 후 미취업자
    - \* 취업성공패키지,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,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「고용보험법」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
  - 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를 통한 직업훈련 이수 후 미취업자
  - 취업지원기관\*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미취업자
    - \*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고령자인재은행,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의 일자리 관련 기관
  - 단, 취업중이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엔 제외

- 현장연수 실시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)에 해당하는 기업\*

\* (우선지원 대상 기업) 1. 광업: 300명 이하, 2. 제조업: 500명 이하, 3. 건설업: 300명 이하, 4. 운수업 및 통신업: 300명 이하, 5 기타 산업: 100명 이하

## □ 참여인원

- 총 2,000명

## □ 참여시간

- 일 8시간, 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
- 1일 참여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으로 하며, 1주간 연수일은 최대 5일로 함

- 참여자 및 현장연수 실시기업의 사정에 따라 양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수일자 및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, 이를 현장연수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

\* 야간(22:00부터 익일 07:00까지) 시간에는 참여 불가 (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불가)

- 참여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(월 단위로 산정)

- 다만,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 일 단위를 포함하여 참여 가능 (예 : 2개월 20일 등)

## □ 참여수당

- 현장연수 참여자에게 참여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5,000원\*을 지급함 (월 40만원)

\* 제조업 5,000원, 비제조업 4,600원

- 월간 참여시간 합계에 1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이 있는 경우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하고, 30분 미만은 인정하지 않음
- 참여기간 중 휴업(또는 재해), 휴가 등으로 현장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
- 다만, 현장연수 실시기업에서 위 참여수당 외에 연수수당을 추가로 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

## 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: 3월 21일~4월 30일
- 접 수 처: 중소기업중앙회
- 접수방법: 방문 및 우편, 인터넷(홈페이지), 이메일, 팩스 접수
  - \* 주 소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-2 중소기업중앙회 1층 50+ 새일터 적응지원사업 담당
  - \* 홈페이지: [www.kbiz.or.kr](http://www.kbiz.or.kr)
  - \* 이 메 일 : 50plus@kbiz.or.kr
  - \* 전 화: 02-2124-3291, 3306~8
  - \* 팩 스: 02-2124-3298

## □ 신청(구비)서류

- 참여자
  - 50+새일터적응지원 참여자 신청서 1부
  - 주민등록등본 1부
- 현장연수 실시기업
  - 50+새일터적응지원 실시기업 신청서 1부
 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